

## 사회보장재정과 자원조달

### 1. 복지지출 현황과 전망

#### □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

- 2009년의 경우 우리나라 OECD SOCX 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102조원, 중앙정부 통합재정기준 복지지출은 76조원, 일반정부 기능별 분류상 복지 지출 통계는 104.6조원으로 나타남<sup>1)</sup>
-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는 비교적 단기간내에 걸쳐 이루어진 사회보험의 도입과 확대, 경제위기시의 사회안전망 강화와 재정지출확대과정을 통하여, 주요 선진국가들에 비해 빠른 기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였음<sup>2)</sup>
  - OECD기준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7년 GDP 대비 7.5%로 OECD국가 평균의 약 38% 정도로 낮은 수준이지만, 90년 이후 연평균 5.93%의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
  - 동기간동안 OECD국가 평균 공공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증가율은 0.52%
  - 80년대 이후 중앙정부 통합재정상의 사회복지지출증가율은 16.9%로, 중앙정부총지출 증가율 15.1%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
- 고도 성장기를 지나 저성장기로 접어들기 시작한 90년대에는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 외환위기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등 사회안전망 확충이 시작되어, 사회복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이 GDP성장률을 상회
  - 이후 사회서비스 확대 및 보육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도입 등이 이루어져 복지지출의 증가율은 정부총지출 증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를 지속하여 왔음

-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보다는 고소득층 즉 다른사람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전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적절한 복지지출 수준보다 복지지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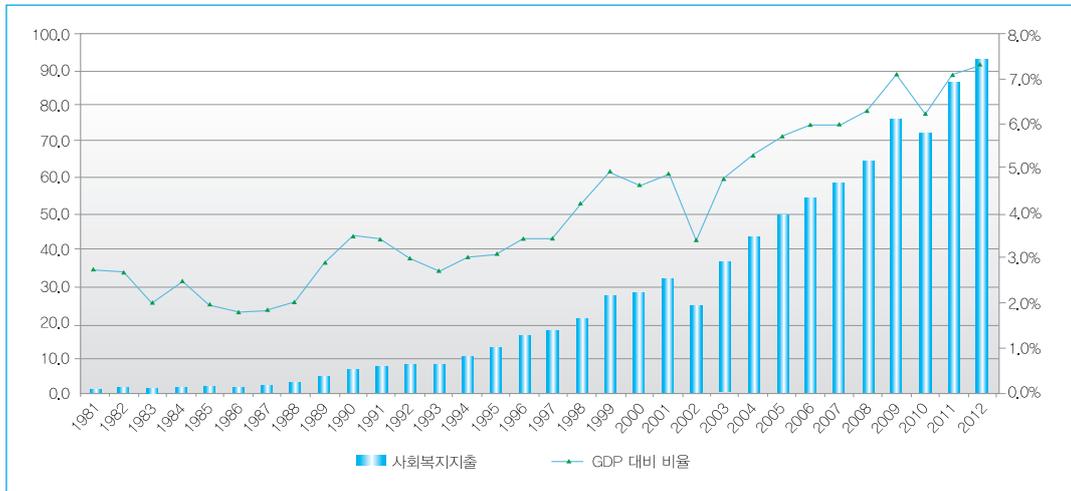
- 부유층에만 추가 세수 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증세효과가 크지 않아, 세수 확충면에서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더 효과적임

- 현재 저부담 저복지 유형에서 중부담 중복지, 혹은 고부담 고복지로의 체제전환이 예상되는 국면에서는 사회보장제(가칭)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복지지출에 따른 국민부담을 체감하도록 하며, 국민적, 정치적 합의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적정복지지출과 국민부담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

1) 일반정부 기능별 분류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 환경,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오락, 문화 및 종교, 교육 및 사회보호로 나뉜. 이중 복지지출은 주택 및 지역개발, 보건, 사회보호를 포함. 중앙정부 통합재정상의 세출 및 순용자의 기능별 분류는 1995년 이전과 이 후가 다름. 1994년까지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기타 지역사회사업, 경제사업, 분류불능 및 기타목적의 9개 부문으로 분류. 1995년부터는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교육,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 오락문화종교, 연료 및 에너지, 농림수산업, 광업제조업건설업, 수송 및 통신, 기타경제사업, 주분류의 지출의 14개 부문으로 분류된. 복지지출은 이중 보건, 사회보장 및 복지, 주택건설 및 지역사회개발을 포함

2) 복지지출의 규모는 OECD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과 GFS 기준을 따른 정부통합재정상의 세출 및 순용자의 기능별 분류상 복지지출 및 일반정부 기능별 분류상 복지지출 통계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발표되고 있음. 정부통합재정상의 세출 및 순용자의 기능별 분류상 복지지출은 지방정부의 지출은 포함하고 있지 않고, 건강보험지출도 정부통계가 아니므로 포함되고 있지 않음. 반면 국민계정상의 일반정부 재정지출에는 지방정부의 지출 외에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국민건강보험지출과 공공부문의 지출이 포함되지만 국민주택기금은 제외되고 있음. 복지지출 규모의 국제 비교에는 주로 OECD기준의 공공사회복지지출(SOCX)이 사용되고, 우리나라 정부의 복지지출수준을 논함에 있어서는 통합재정상의 복지지출 규모가 자주 사용되고 있음

[그림 1] 중앙정부 통합재정상의 복지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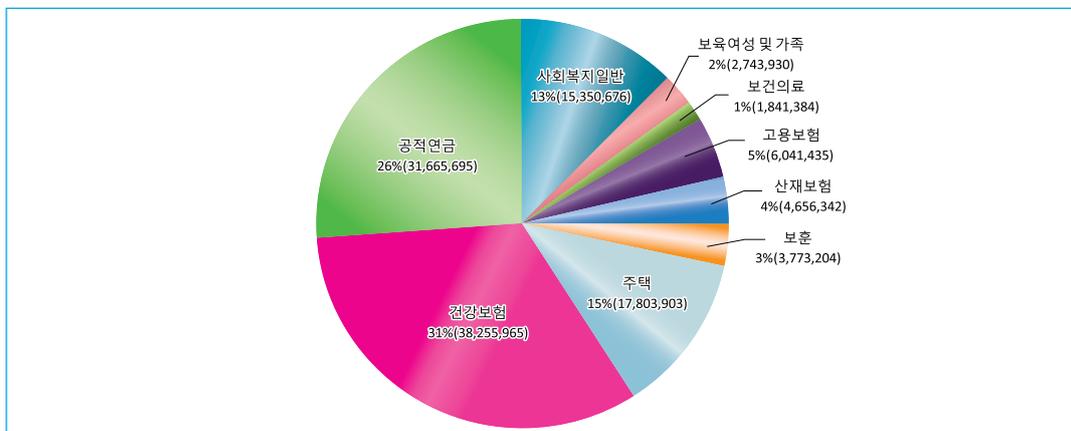


주: 2011, 2012년 GDP는 추정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연도별 재정운용계획, 국가통계포털(<http://kosis.go.kr>)

□ 복지부문 자원배분 현황

- 우리나라 복지지출은 사회보험지출이 전체의 약 66%
  - 건강보험이 약 31%, 공적연금이 26%,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이 각각 5%와 4%
  - 기초생활보장지출, 취약계층지원, 사회서비스 및 일자리관련 지출은 전체 복지지출의 약 13%
  -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보육 및 가족관련 지출은 전체 복지지출의 약 2%
  - 보건의료부문 지출은 전체 복지지출의 1%정도
- 회계별로 보면 일반조세를 세원으로 하는 일반회계지출이 약 26%이며, 특별회계지출이 약 1%, 기금지출이 약 89조원으로 전체 복지지출의 73%

[그림 2] 복지지출의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2011년, 백만원)



주: 사회복지일반은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노인, 청소년, 노동기타, 사회복지일반 사업임  
 자료: 각년도 부처별기금운용계획, 건강보험공단 통계연보, 국가재정통계연보

## □ 복지분야 자원배분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는 보건, 실업(3.3%)부문에 대한 자원배분이 OECD국가들에 비해 높은 반면, 노령, 가족, 적극적노동시장부문의 자원배분은 주요 OECD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은 편임
- 노령부문의 경우 전체 GDP 대비 비중도 1.6%로 주요 선진 국가에 비해 매우 낮고, 자원 배분수준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급속한 고령화속도, 노인의료비의 증가와 연금급여 지출의 본격화는 향후 노령부문의 지출을 급속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
- 보육, 자녀양육지원등 가족부문의 자원배분도 OECD국가들의 경우보다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음
  - 가족부문의 자원배분 비중에 관한 논의는 각 나라의 복지레짐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음. 한국적 상황하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개인, 국가, 기업의 책임이 공조될 필요성 있음
-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에 관한 지출은 GDP의 약 0.13% (전체 복지지출대비 1.73%)로 주요 선진국가에 비하여 낮은 편
  - 복지국가들의 경험을 살펴볼 때, 복지국가로서의 성패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적 싸이클에 달려있는 만큼 적극적노동시장정책분야는 중점적으로 투자되어야 할 부분임

〈표 1〉 복지부문 자원배분의 국제비교 (2007년)

(GDP대비 비율임, ( )은구성비)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적극적 노동시장	실업	주택	기타	계
프랑스	11.1 (38.9)	1.7 (6.2)	1.8 (6.2)	7.5 (26.4)	3.0 (10.5)	0.9 (3.2)	1.4 (4.8)	0.8 (2.7)	0.3 (1.2)	28.4 (100.0)
스웨덴	9.0 (32.9)	0.5 (2.0)	5.0 (18.4)	6.6 (24.1)	3.4 (12.3)	1.1 (4.0)	0.7 (2.4)	0.5 (1.7)	0.6 (2.2)	27.3 (100.0)
독일	8.7 (34.4)	2.1 (8.2)	1.9 (7.5)	7.8 (31.2)	1.8 (7.3)	0.7 (2.9)	1.4 (5.5)	0.6 (2.4)	0.2 (0.7)	25.2 (100.0)
영국	5.8 (28.1)	0.1 (0.7)	2.4 (11.9)	6.8 (33.3)	3.2 (15.8)	0.3 (1.5)	0.2 (1.0)	1.4 (7.0)	0.2 (0.8)	20.5 (100.0)
OECD평균	6.4 (33.5)	1.0 (5.0)	2.1 (11.1)	5.8 (30.2)	2.0 (10.1)	0.5 (2.4)	" "	" "	0.7 (3.6)	19.3 (100.0)
일본	8.8 (47.0)	1.3 (6.9)	0.8 (4.2)	6.3 (33.7)	0.8 (4.2)	0.2 (0.9)	0.3 (1.7)	" "	0.3 (1.4)	18.7 (100.0)
미국	5.3 (32.7)	0.7 (4.3)	1.3 (8.1)	7.2 (44.7)	0.7 (4.1)	0.1 (0.7)	0.3 (2.1)	" "	0.5 (3.4)	16.2 (100.0)
한국	1.6 (21.4)	0.3 (3.4)	0.6 (7.3)	3.5 (46.5)	0.5 (6.1)	0.1 (1.7)	0.3 (3.3)	" "	0.8 (10.3)	7.5 (100.0)

자료: 최성은 (2011)에서 재인용, OECD Stats.

## □ 보건복지재정의 향후 전망과 추가적 복지자원 마련의 필요성

- 복지지출은 대부분 대상자 및 급여수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법정지출의 비중이 약 89%), 보건복지지출은 현 제도를 유지하기만 하여도 자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기존의 복지제도를 유지만 하여도 GDP대비 복지지출은 2010년 약 8.9%~10.9%에서 2030년 경에는 약 15.2%~20.6%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증가는 대부분 건강보험지출, 연금급여 지출, 장기요양보험 지출 등, 노인의료비 및 노후소득보장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짐
  - 건강보험지출의 경우 2011년 현재 약 38조원수준에서 2015년 경에는 약 48조~58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sup>3)</sup>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2009년 약 1조 9천억원에서 2015년경에는 약 3.4조원~5.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sup>4)</sup>
  - 장기요양보험의 경우 현재 대상자가 65세이상 인구의 5.1%로 과소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대상자를 노인의 10%까지 확대하는 경우 현행대비 약 4,200억원(국비지원액 기준)이 추가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인상이 필요<sup>5)</sup>
  - 국민연금지출의 경우 2011년 현재 약 10조원에서, 연금급여의 본격화와 고령화의 심화등으로 인해 2015년 경에는 약 15.4조~17.1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sup>6)</sup>
  - 사학연금기금은 2020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
  -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65세이상 노인 70%에 대하여 월 급여 9.1만원을 지급하여 2011년 현재 약 2조8,266억원의 국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중 최고인 점등에 근거하여 급여수준과 대상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어왔음
  - 기초노령연금의 급여기준을 현행 국민연금A값(가입자평균소득, 179만원, 2011)의 5%에서 6%로 올리는 경우 약 5,600억원의 추가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sup>7)</sup>
  - 기초노령연금의 적용노인비율을 80%로 올리는 경우 약 4,000억원의 추가재원 소요전망<sup>8)</sup>
- 2011년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가 실현된다는 가정하의 신규 복지지출증가분은 GDP의 1.49%로 추정되어, 2050년경에는 이에 의한 복지증가분만 GDP의 6.67%로 추정<sup>9)</sup>

## 2.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 □ 세입구조의 국제비교

- 우리나라는 간접세수가 직접세수보다 약간 높음
  - 대부분의 국가 (뉴질랜드, 덴마크, 호주, 노르웨이, 캐나다, 미국, 스위스, 스웨덴, 일본, 독일 등)에서는 평균적으로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높은 경향

3) 박형수의 (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일수 외 (2010), "건강보험 중장기 재정전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4) 최인덕외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 중장기 재정운용전망과 정책과제"; 박형수의 (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5) 국회예산정책처 (2011), 내부자료

6) 박형수의 (2009),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추계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1), "100세 대응을 위한 미래 전략세미나"

7) 국회예산정책처 (2011), 내부자료

8) 국회예산정책처 (2011), 내부자료

9) 강성원 (2011), "무상복지의 장기비용 추계"

- 간접세수는 GDP 대비 8.4%로 북유럽국가나 자유주의 국가를 제외하고는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직접세 31%보다 약간 높은 31.6%수준임
- 근로소득세수는 GDP대비 3.1%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편에 속하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6%로 낮은 편임
- 법인세수는 GDP대비 4.2%로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높은 편이며,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6%로 높은 편임
-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수입은 GDP대비 5.8%로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편임
  - 프랑스, 오스트리아,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체코등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여금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음
  - 이들 국가들의 경우 고용주 부담률이 높은 경우가 많음

〈표 2〉 주요국가의 세입구조 (2008년) (GDP대비 비중, %)

	총 세입 부담	직접세							간접 세	사회보장기여금				기타
		개인				법인				총 기여 금	개인	법인	자영 업자	
		총계	개인 총 부담	소득 세	자본	법인 총 부담	이윤	자본						
한국	26.5 (100)	8.2 (31.0)	4.0 (15.1)	3.1 (11.6)	0.9 (3.4)	4.2 (16.0)	4.2 (16.0)	0.0 (0.0)	8.4 (31.6)	5.8 (21.8)	2.4 (8.9)	2.6 (9.6)	0.9 (3.2)	4.1 (15.6)
일본	28.2 (100)	9.5 (33.7)	5.6 (20.0)	5.6 (20.0)	0.0 (0.0)	3.9 (13.7)	3.9 (13.7)	0.0 (0.0)	5.1 (18.0)	10.9 (38.6)	4.8 (17.2)	5.0 (17.8)	1.0 (3.6)	2.7 (9.7)
미국	26.4 (100)	11.8 (45.2)	9.9 (38.1)	9.3 (35.6)	0.7 (2.5)	1.8 (7.1)	1.7 (6.3)	0.2 (0.7)	4.6 (17.7)	6.5 (25.1)	2.9 (11.0)	8.7 (33.3)	0.4 (1.3)	3.2 (12.1)
독일	37.0 (100)	11.5 (31.1)	9.6 (26.0)	9.6 (26.0)	0.0 (0.0)	1.9 (5.1)	1.9 (5.1)	0.0 (0.0)	10.6 (28.5)	13.9 (37.6)	6.1 (16.6)	6.5 (17.7)	1.2 (3.4)	1.0 (2.8)
스웨덴	46.3 (100)	16.8 (36.3)	13.8 (29.8)	13.0 (28.1)	0.8 (1.8)	3.0 (6.4)	3.0 (6.4)	0.0 (0.0)	12.8 (27.7)	11.5 (24.8)	2.8 (6.0)	8.5 (18.4)	0.2 (0.5)	5.2 (11.2)

자료: OECD Stats, Revenue Statistics의 항목임

\* Revenue Statistics의 세부항목은 총세입부담(Total tax revenue), 직접세 총부담(on income, profits and capital gains), 개인 총부담(of individuals), 소득세(on income and profits), 자본(on capital gains), 법인 총부담(of Corporate), 이윤(On profits), 자본(On capital gains), 간접세 부담(goods and services), 사회보장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기타는 나머지 항목의 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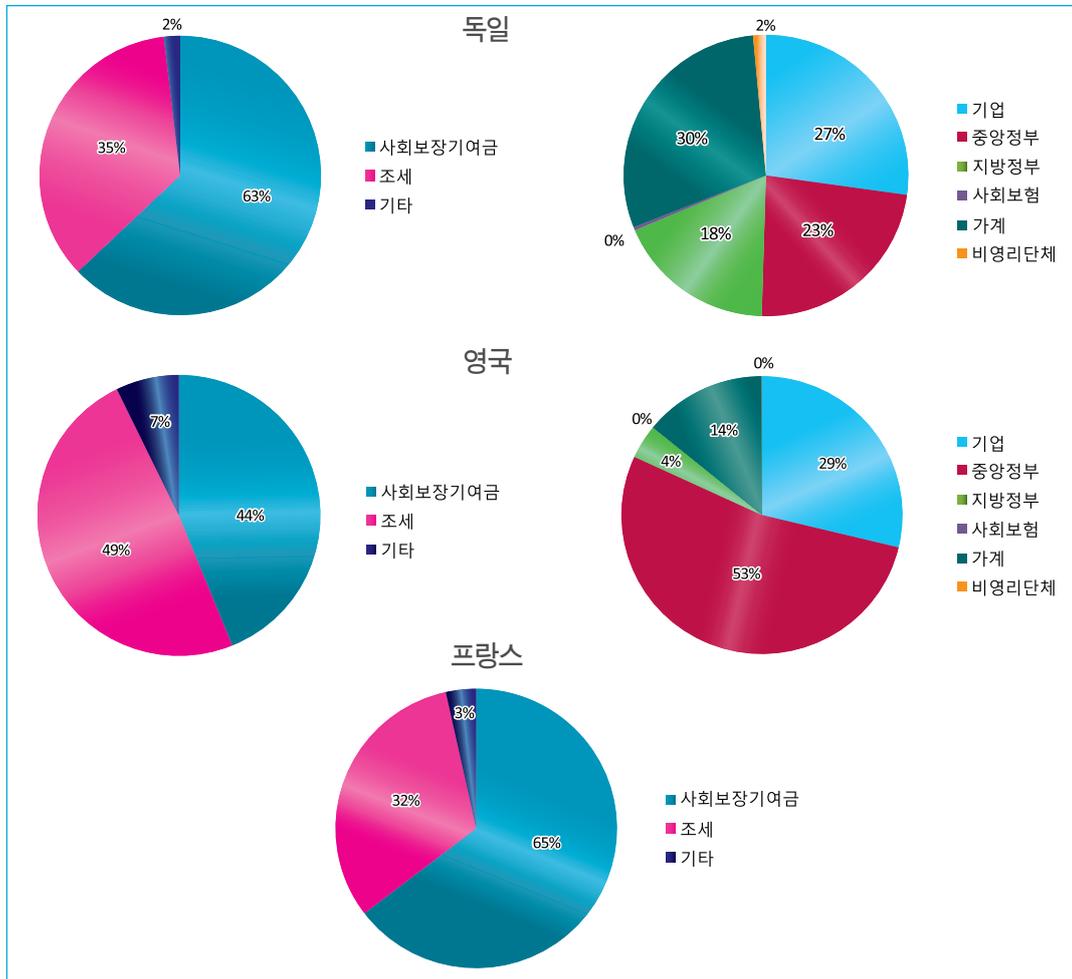
\*\* ( )는 총세입부담에 대한 비중임

## □ 복지재원 구조의 국제비교

### ○ 독일

- 사회보장기여금은 고용주가 약 60%를 부담하여, 근로자에 비해 많은 부담을 지고 있음
- 기업의 사회보장재원 부담의 GDP대비 비율은 1991년 9.6%에서 2009년 약 8.9%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반면 가계의 사회보장부담은 1991년 GDP 대비 7.8%에서 2009년 약 9.6%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여짐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보장부담도 현저한 증가추세에 있어, 독일의 사회보장재원 부담의 주체는 기업에서 가계 및 정부로 이동하고 있는 듯 보여짐

[그림 3] 유형별, 부담주체별 복지재원 부담현황 (2009년)



자료: Eurostat, European social statistics\_social protection

○ 영국

- 2009년의 경우 사회보장기여금이 전체 사회보장재원의 44%, 조세수입이 47%를 차지
- 사회보장기여금에는 고용주의 기여분이 약 73%로 근로자 부담분보다 높음
- 재원부담의 주체별로는 중앙정부가 전체 사회보장재원의 53%를 부담하고, 기업이 29%, 가계가 14%를 부담하며, 지방정부의 부담은 4%로 상대적으로 미미함

○ 프랑스

- 사회보장재원으로서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높는데, 이중 고용주의 부담은 약 68%로 근로자의 부담보다 높음
- 사회보장지출의 재원조달을 위한 목적세로 근로소득과, 가족급여 및 공공부조급여를 제외한 복지급여, 그리고 자산소득에 사회보장세(CSG, contribution sociale generalisee)가 부과되고 있음

###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 복지지출 증가 전망에 따른 세금인상, 사회보험료인상등을 통한 세수증대의 필요성

- 국고를 재원으로 하는 법정 복지지출의 자연적 확대와 함께 건강보험, 연금등 사회보험 지출의 확대는 사회보험료 인상과 함께 동반되는 국고지원의 확대를 가져오므로, 재정 건전성 유지와 지속적인 사회안전망구조의 확립을 위하여서는 세입확충이 필요
- 복지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세출측면에서의 조정과 세입확충, 국채발행, 사회보험료 인상, 민간부문의 활용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세출측면의 구조조정과 재원배분의 조정은 관련 이해당사자가 많아 한계가 있고, 국채발행도 재정건전성과 국가재정관리가 요구되는 현실점에서는 한계가 있어, 세수 증대가 불가피해짐

#### □ 복지지출에 따른 세금부담의 주체

- 누진적 세금체계에서 고소득층이 부담하는 세금의 절대액이 많은 관계로 대부분의 국민은 자신의 부담이 늘어난다기 보다는 고소득층 즉 다른사람의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전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사회적으로 적절한 복지지출 수준보다 복지지출이 증대될 가능성이 농후함
- 공공부조형 복지가 근간을 이루는 경우 부유층이 부담하고 저소득층이 수혜하는 형태의 재분배정책이 적절하나, 현재와 같이 복지의 수혜자가 중산층까지 확대되고 더 나아가 보편적복지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세금부담의 주체도 중산층, 더 나아가 저소득층까지 확대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도 있음
  - 보편적 복지체제의 북유럽국가의 경우 소득역진적인 부가가치세율이 20%대를 넘어서는 등 세부담이높고 사회보험료 및 근로소득의 세부담도 높은 반면, 자산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부유 자산에 대한 버핏세는 누진적 조세체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며 대중적 인기가 있음에 비해, 조세회피현상에 따른 세수손실 가능성이 있고 이로인한 세수의 규모가 넓은 세원에 의한 세수보다 크지 않을 수 있음
  - 부유층에만 추가 세수부담을 지우는 것은 상징적 효과에 비해 실질적 증세효과가 크지 않음
-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국면에서는 미래세대와 젊은세대가 현세대와 장년세대 보다 복지지출의 부담을 더 안게 되는 세대간 형평성의 문제도 발생됨

#### □ 복지재원조달 방안

- 복지전달체계의 개선, 부처간 역할의 조정등을 통한 지출의 효율화와 세출구조조정, 예산 및 기금의 구조조정, 예산운용의 효율화등 지출측면 효율화 노력이 원론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세수 확대를 위해서는 현행 조세체계의 구조조정, 비효율적인 조세감면제도의 폐지, 세율 인상, 세원확대 및 세제신설등의 세제개편 방안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여야 함
  - 복지수요증가, 재정여건의 변화등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현행 조세구조의 개편, 사회보장세의 신설, 민간부문의 역할 강화, 고용주 기여를 통한 신규재원확보등의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됨

- 우선적으로 조세감면제도의 정비 및 축소를 통한 재원확충이 필요함
  - 조세감면제도의 비효율성과 폐지 필요성에 대하여서는 공감대가 비교적 널리 형성되어 있고, 양당의 향후 재원확충방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나,
  -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는 각각의 조세감면제도를 폐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목적세와 부담금등 특별회계와 기금의 재원과, 지방세와 국세 항목의 구조조정등 재정 운용상의 비효율성 개선을 통한 재원확보가 필요함
  - 재원의 칸막이 현상으로 인하여 특정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재원은 남아도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기금, 특별회계등의 재원과 목적세 부담금등을 재편하는 구조조정을 통한 예산 효율성 도모와 추가적 재원확보가 필요함
  - 부처간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도 유사한 성격의 사업들에 대하여서는 부처가 다르다 하더라도 기금등의 재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지방세중에도 세원이 특정 지역에만 편중되어 있는 경우 국세화하여 배분하는 방안도 고려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원칙하에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세수 규모 증가에는 보다 유리함
- 소득세의 역진성을 강화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축소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소득세제내의 각종 근로소득공제는 높은 소득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층에게 더욱 혜택이 가는 역진성을 가짐
  - 예를 들면, 100만원의 근로소득공제는 소득세율이 35%인 고소득자는 35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는 반면, 소득세율이 0%인 면세점 이하인 저소득자는 0원의 공제혜택을 받음
  - 근로소득공제보다는 근로세액공제나 직접적인 보조금 지불의 방식이 보다 적합함
  - 실제로 아동수당등 자녀양육에 관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소득세제의 부양가족공제등을 폐지하여 수당의 재원을 마련한 사례를 많이 볼수 있음
  - 향후 보육료 지원과 양육수당등이 보편적으로 제공되는 보육정책이 정착될 경우 소득공제 제도의 정비를 통한 세수입 증대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 사회보장세(가칭)의 신설

- 사회보장세(가칭)를 신설하여 복지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 저부담 저복지 유형에서 중부담 중복지, 혹은 고부담 고복지로의 체제전환이 예상되는 국면에서, 사회보장세를 명시적으로 도입하여 복지지출에 따른 국민부담을 체감하도록 하며,
- 사회보장세의 신설에 대한 국민적, 정치적 합의과정을 통해 우리사회의 적정복지지출과 국민 부담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함
- 사회보장세를 도입한 프랑스의 경우 복지지출의 증가를 국채로 재원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적자재정을 메꾸기 위해 소득세, 담배, 자동차보험료등에 사회보장세를 부가하였음

최성은(사회보험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26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